

경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사업) 본 상담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인 및 집단상담
2. 심리검사 및 심리검사 해석상담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4. 학생실태 조사 및 연구
5. 교직원 상담역량 강화 교육
6.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학생지도상담 시스템(All in One) 총괄 운영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① 상담센터에는 심리상담소, 인권·양성평등상담소, 대학생활교육개발실을 둔다.

② 상담센터는 센터장, 운영위원, 상담연구원 및 인턴상담원, 객원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제5조(상담센터장) ①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각 상담 소(실)장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상담연구원) ① 상담연구원은 상담 및 심리검사,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② 상담연구원은 상담 또는 임상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인턴상담원) ① 인턴상담원은 상담연구원의 감독 하에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인턴상담원은 상담 또는 임상관련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센터장이 학기 단

위로 선발하며, 업무를 보조한다.

제8조(객원상담원) ① 객원상담원은 상담센터의 상담 또는 기타 사업의 운영을 돕는다.

② 객원상담원은 상담 및 임상관련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담센터는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기상담자문위원) 성폭력, 자살, 범죄피해 등 위기 학생들의 신속한 개입과 상담을 위해 위기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11조(업무) ① 상담센터는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부서들의 총괄운영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된다.

② 상담센터는 매년 신입생의식조사·재학생실태조사 등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프로그램을 개발에 반영한다.

③ 전년도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개선안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편성계획을 수립한다.

④ 수립한 편성계획은 학생진로상담위원회를 통해서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운영한다.

⑤ 심리상담지원 주관부서로서 운영부서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참여자(수료) 명단, 집행예산, 만족도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성과보고 자료를 수합하여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진로상담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상담센터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상담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예산안
2. 상담센터 운영의 결과 및 결산안
3. 상담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
4.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기타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상담센터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 참여기관출연금, 교내지원금, 연구보조금(연구용역 간접비 포함),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용역)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 계약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17조(예산·결산) 상담센터 예산의 편성,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상담센터장이 행한다.

제18조(회계연도) 상담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장 보 칙

제19조(해산) 상담센터의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